

# 축산물(소도체)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 안내

## 1. 개정이유

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(2004.8.17)되고 현행 등급기준에서는 거세우 장기 비육시 육량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등급판정결과와 맛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고급육 출현을 증가추세에 맞추어 기존 육량지수 산출 공식과 육질등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육량등급 판정기준인 육량지수 산식 및 육량등급별 지수범위를 조정함 (제4조)
- 나. 육질등급을 현행 1\*, 1, 2, 3등급의 4개 등급에서 1\*\*, 1\*, 1, 2, 3등급의 5개 등급으로 확대하고, 이에 따라 근내지방도 기준을 현행의 7개 단계(No.1~No.7)에서 9개 단계(No.1~No.9)로 세분화하며,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에서 하향조정 해당항목 수에 따른 등급하락단계를 조정하며, 등급표시 방법을 현행 육량·육질(예 A1\*)에서 육질·육량(예 1\*A)으로 개정함(제5조, 별표 3, 별표 4 및 부도 5)

## 3. 축산물(소도체)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내용 신·구 대조표

현행	개정	사유																
<p><b>제2장 소도체 등급판정</b> 제4조[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] ①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, 비후성근단면적,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, B,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. &lt;육량등급판정기준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육량등급</th> <th>육량지수</th> </tr> <tr> <td>A</td> <td>69.00 이상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66.00 이상~69.00 미만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66.00 미만</td> </tr> </table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육량지수는 소를 도육한 후 2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부노1과 같이 마지마등배(혹추와 제1허리배)요추 사이를 직계한 후 등심쪽의 전개면이하 "등급판정부위"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. 1. ~ 2. (생략) 3. 도체중량 :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분의 중량을 해당위로 적용한다.&lt;단서규정 신설&gt;</p>	육량등급	육량지수	A	69.00 이상	B	66.00 이상~69.00 미만	C	66.00 미만	<p><b>제2장 소도체 등급판정</b> 제4조[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]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&lt;육량등급판정기준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육량등급</th> <th>육량지수</th> </tr> <tr> <td>A</td> <td>67.50 이상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62.00 이상~67.50 미만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62.00 미만</td> </tr> </table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2. (변형과 동일) 3. 도체중량 : ----- 다만, 도체중량이 소숫점까지 제시된 경우 첫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적용한다.</p>	육량등급	육량지수	A	67.50 이상	B	62.00 이상~67.50 미만	C	62.00 미만	<p>최고기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출하체중 증가 등급 기준에 반영</p> <p>도체중량적용기준을 명확히 함</p>
육량등급	육량지수																	
A	69.00 이상																	
B	66.00 이상~69.00 미만																	
C	66.00 미만																	
육량등급	육량지수																	
A	67.50 이상																	
B	62.00 이상~67.50 미만																	
C	62.00 미만																	



현행	개정	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3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</p> $\text{육량지수} = 65.834$ $- 10.393 \times \text{등지방분계}(\%)$ $+ 10.088 \times \text{배최장근단면적}(\text{cm}^2)$ $- 10.008 \times \text{도체중량}(\text{kg})$ <p>[단, 육용품종(肉用品種)의 소도체는 2.01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]</p> <p>4. 3.5(현행)과 같음</p> <p>제5조(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 기준) 1. 소도체의 육질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(Marbling), 육색, 지방색, 조직감, 심숙도에 따라 1, 2, 3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.</p> <p>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근내지방도 :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서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4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.</p> <p>&lt;육질등급 예비판정기준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내지방도</th> <th>예비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1*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1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2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5.3(현행)과 같음 3.5(현행)과 같음</p> <p>[별표3]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(제5조제3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예비등급</th> <th colspan="4">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</th> </tr> <tr> <th>1개</th> <th>2개</th> <th>3개</th> <th>4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*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tr> <td>1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등외</td> </tr> <tr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등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4] 도체의 등급표시 방법(제7조제7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5">육질 등급</th> </tr> <tr> <th>1*등급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등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육량 등급</td> <td>A등급</td> <td>A1</td> <td>A2</td> <td>A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방목 등급</td> <td>B등급</td> <td>B1</td> <td>B2</td> <td>B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중량 등급</td> <td>C등급</td> <td>C1</td> <td>C2</td> <td>C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등급</td> <td colspan="5">D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5-2] (현행)과 같음 부도1~3(현행)과 같음</p> <p>[별표4] 근내지방도 기준(제5조제2항제1호관련)</p>	근내지방도	예비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	1*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	1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	2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	3등급	예비등급	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				1개	2개	3개	4개	1*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등외	3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등외	구분	육질 등급					1*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등외	육량 등급	A등급	A1	A2	A3		방목 등급	B등급	B1	B2	B3		중량 등급	C등급	C1	C2	C3		등급	D					<p>3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</p> $\text{육량지수} = 65.184$ $- 10.625 \times \text{등지방분계}(\%)$ $+ 10.130 \times \text{배최장근단면적}(\text{cm}^2)$ $- 10.024 \times \text{도체중량}(\text{kg})$ <p>[단, 한우의 도체는 3.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]</p> <p>4. 3.5(현행)과 같음</p> <p>제5조(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 기준) 1. 소도체의 육질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(Marbling), 육색, 지방색, 조직감, 심숙도에 따라 1*, 1, 2,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.</p> <p>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근내지방도 :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서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4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.</p> <p>&lt;육질등급 예비판정기준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내지방도</th> <th>예비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8 또는 9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1*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1*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1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2등급</td> </tr> <tr> <td>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5.3(현행)과 같음 3.5(현행)과 같음</p> <p>[별표3]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(제5조제3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예비등급</th> <th colspan="4">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</th> </tr> <tr> <th>1개</th> <th>2개</th> <th>3개</th> <th>4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*등급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tr> <td>1등급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td>2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/tr> <tr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3등급</td> <td>등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4] 도체의 등급표시 방법(제7조제7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5">육질 등급</th> </tr> <tr> <th>1*등급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등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육량 등급</td> <td>A등급</td> <td>1A</td> <td>1A</td> <td>2A</td> <td>3A</td> </tr> <tr> <td>방목 등급</td> <td>B등급</td> <td>1B</td> <td>1B</td> <td>2B</td> <td>3B</td> </tr> <tr> <td>중량 등급</td> <td>C등급</td> <td>1C</td> <td>1C</td> <td>2C</td> <td>3C</td> </tr> <tr> <td>등급</td> <td colspan="5">D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등급표시를 읽는 방법에 : 1. A: 일품플러스에이등급, 1. B: 일품플러스비등급, 3C: 삼치등급</p> <p>[별표5-2] (현행)과 같음 부도1~3(현행)과 같음</p> <p>[별표4] 근내지방도 기준(제5조제2항제1호관련)</p>	근내지방도	예비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8 또는 9에 해당되는 것	1*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	1*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	1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	2등급	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	3등급	예비등급	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				1개	2개	3개	4개	1*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1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2등급	2등급	3등급	등외	구분	육질 등급					1*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등외	육량 등급	A등급	1A	1A	2A	3A	방목 등급	B등급	1B	1B	2B	3B	중량 등급	C등급	1C	1C	2C	3C	등급	D					<p>쇠고기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출하체중 증가 등을 기존에 반영</p> <p>쇠고기 고급화 추세에 맞게 육질등급의 확대</p> <p>육산연구소의 성숙도 관련 시책건의등 반영</p> <p>소비단계에서 등급표시 혼란을 최소화</p> <p>쇠고기의 고급화 추세에 따른 근내지방도 기준 세분화</p>						
근내지방도	예비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	1*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	1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	2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비등급	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개	2개	3개	4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*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등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등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육질 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*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등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량 등급	A등급	A1	A2	A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목 등급	B등급	B1	B2	B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량 등급	C등급	C1	C2	C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	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	예비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8 또는 9에 해당되는 것	1*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	1*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	1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	2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비등급	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개	2개	3개	4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*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2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3등급	3등급	3등급	등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육질 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*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등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량 등급	A등급	1A	1A	2A	3A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목 등급	B등급	1B	1B	2B	3B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량 등급	C등급	1C	1C	2C	3C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	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